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16
발 의 자 : 옥영복의원의외 6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하는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및 수입 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위원정수 : 7명
- 나. 위원선임 :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다.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: 총무위원회 3명, 도시위원회 4명
- 라. 활동기간 : 제153회 제2차 정례회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
- 나.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